

합리적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설정 학술용역 실시

합리적으로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고정비용, 단위비용을 재산출하고, 자치구 재정건전성 세입·세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치구의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유도하고자 함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2014예산 (A)	2015예산 (B)	증감 (B-A)	$(B-A)*100/A$
-	70,000	70,000	100.0%

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조례에 근거 3년마다 기준재정수요액의 고정비용, 단위비용을 재산출하고, 자치구 세입·세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조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자치구의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유도하고자 함

사업근거

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자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

제8조② : (생략)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3년마다 측정항목별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, 시비 등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년간의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산출하여 규칙으로 정한다

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15. 1월 ~ 8월
- 사업내용 : 학술용역을 통한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고정비용, 단위비용 산정 및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·세출 가이드라인을 제시
 - 고정비용, 단위비용 : 일반관리비, 일반복지비, 보건위생비, 도로관리비 등 각 18개 비용 최근 3년간(2012년~2015년) 세출예산 평균액 기초로 산출
 - 세입·세출 기준 : 자치구 재정진단 후 세출 절감 가이드라인 및 세외 수입 현실화 기준안 (사용료, 수수료 적정 가격 산정 등) 제시
- '15년도 소요예산 : 70,000천원
 - 공청회 2회 개최비 4,992천원, 연구용역비 65,008천원

추진경위

-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'13.12.31.)
 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의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재원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변경됨으로써, 제도개선을 포함하여 상기 조례 개정 실시
- 향후 2016년~2018년 기준재정수요 고정비용, 단위비용 산출을 위한 조례개정 예정
 - ※ 고정비용, 단위비용은 3년을 주기로 재산정

2015년도 예산(단위 : 천원)

구분	2013결산	2014예산(A)	2015예산(B)	증감(B-A)
계			70,000	70,000
사무관리비			4,992	4,992
자치구 공청회 개최			4,992	4,992
연구용역비			65,008	65,008
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학술연구 용역			65,008	65,008

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

<p>< 총 소요예산 : 70,000천원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무관리비 : 4,992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자치구 공청회 개최비 : 4,992천원 = 4,992천원×1식 ■ 연구용역비 : 65,008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건비 : 48,167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책임연구원 21,133천원 = 3,019천원×7개월 - 연구원 16,205천원 = 2,315천원×7개월 - 연구보조원 10,829천원 = 1,547천원×7개월 · 경비 : 14,600천원 · 일반관리비(인건비+경비의 3.5%) : 2,197천원 = 62,767천원×3.5% · 수수료율(일반관리비의 2%) : 44천원 = 2,197천원×2% <p>※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안행부 예규, 2014. 2월) 및 2015년 예산편성 잠정기준(서울시, 2014.7월) 근거 연구용역비 산출</p>
--

사업추진 절차

○ 집행절차

- 학술용역 심의 의뢰(조직담당관) ⇨ 학술용역사업비 예산반영(예산담당관)
-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⇨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체결 ⇨ 학술용역 보고 ⇨ 학술용역 결과물 제출(조직담당관) ⇨ 결과 활용보고서 제출(조직담당관) ⇨ 학술용역 종합평가(학술용역심의회, 조직담당관)
- 학술용역 결과물 유관부서, 자치구 공유 / 자치구 재정건전화 방안 수립

○ 계약체결

- 제한경쟁입찰 내지 수의계약 의뢰

2015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

○ 추진방향

- 조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출
- 자치구 세입·세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

○ 추진일정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계획	추진세부내용
계		70,000	
학술용역 위원회 상정	2014. 9월	-	학술용역 심의 완료
학술용역 계약 체결	2015. 2월	20,008	
자치구 공청회 개최	2015. 3월/5월	4,992	학술용역 개요 보고 및 의견 조회
학술용역 결과 보고	2015.10월	45,000	관련부서 등 결과보고 송부
조례개정 실시	2015.10월		

실·본부·국	부서명	담당자			
		행정국	행정과	행정협력팀장	오세우 (2133-5812)

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계획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.

<http://opengov.seoul.go.kr/sanction>